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진단

연구수행 : 고 승 희

CDi 충남발전연구원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진단

고승희(충남발전연구원)

목 차

- 1 배경 및 목적
- ②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및 특징
- ③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실태
- ④ 지방세외수입의 문제
- 5 지방세외수입의 개선과제



1 배경 및 목적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화 및 사회복지 팽창 등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
 -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따라 자치단체는 재정력 확충이라는 당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자주재원의 증대는 자치단체 운영의 가장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재원 기반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며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수를 늘리는 실효성 있는 제도의 마련과 함께 지방세외수입의 확대도 모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라는 두 축으로 자체재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 조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기존 조세의 세율인상이나 신규세원의 발굴에도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환경하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 율성을 제고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 능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사용료·수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로부터 수혜자별 편익을 기준으로 공 공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사용자부담은 조세 자체를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전한 공공비용부담원칙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세 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현실이며 이의 대표 적인 이유로 법령의 미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미구축 등이 지적되었음
- 이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기반은 마련되었으며 향후 지방세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과 이를 운영할 지방세입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징수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징수율 제고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 시· 도별 기초자치단체 1개 기관, 전국 지방연구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네트워크가 구 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의 추진과제로서 시도별 해당 기초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지방세외수입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충청남도와 천안시, 충남발전연구원이 천안시의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외수입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수익 자 부담 원칙과 과세형성개선과 세외수입의 시장기능 왜곡방지 및 시민의 관 점에서 예산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세외수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현재의 세외수입에 대한 이론적 검 토와 함께 합리적인 세외수입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외수입의 실태와 문제 그리고 요율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함

② 세외수입의 개념 및 특징

1. 세외수입의 개념

- 세외수입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거래의 성격에 대해서 부과되는 요금, 즉 특정한 편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요금으로 정의됨!)
 - 협의의 개념은 사용료·수수료의 범위를 다소 축소하여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서비스에 대한 편익요금으로 정의하며 여기에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수수료, 특별평가 부담금이 포함됨
 - 사용료·수수료의 개념을 최협의로 정의하면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가운데 공공성은 매우 강하지만 소비로 인한 편익의 범위가 특정 개인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귀속되고 서비스의 소비나 요금지불이 자발적인 경우에 한정됨. 많은 경우 세외수입이라 함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말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와 같은 최협의 개념으로 정의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외수입의 개념을 다소 확장하여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협의의 세외수입 이외에도 각종 면허 및 인허가 수수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1)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

(1)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 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안전행 정부, 2014).

¹⁾ 이 경우 협의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물론 임대수입, 특허수입, 용도가 지정된 물품세, 면허 및 각종 인·허가, 정부재산의 매각수입, 공공대출에 대한 이자수입, 산재 및 공공보험료수입, 공기업운영수입, 재산권수입, 연금 및 건강보험료수입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① 재산임대수입

○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분됨(토지·건물의 임대수입,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등)

② 사용료

○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하여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의거 징수하는 점에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데 반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개인·단체 등이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 부과하는 점이 다름(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③ 수수료

○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특정 사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써 주민서비스 향상의 요청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 화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음(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등)

④ 사업수입

○ 사업수입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종축장·임업시험장·원종장 등에서 발생 하는 부산물 매각수입과 주차장 운영수입·보건소 진료수입 등이 있음

⑤ 징수교부금수입

○ 징수교부금은 국세·도세·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군이 위임을 받아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 시·군 간의 재원배분이라는 의미도 있음

⑥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입금(자금)을 예치·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임

(2)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①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라 공유물건인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유재산 법령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 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 및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익수입이 포함됨

② 부담금

○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 함은 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 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익자 부담금 또는 특별 부담금이라 함(예산과목상 부담금수입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수입도 포함된다).

③ 기타수입

 기타수입이란 이상의 각종 수입 이외의 수입을 일괄한 것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그 외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등이 있음

④ 지난년도수입

○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년도의 출납폐쇄기한(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 년도수입으로 정리함

⑤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14년 지방예산 편성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세외 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15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에서 제외 예정)

⑥ 이월금

○ 전년도의 결산결과 생긴 잉여금 중 당년도로 이월된 분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 이외에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등의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14년 지방예산 편성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15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에서 제외 예정)

⑦ 전입금

○ 전입금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의 이 동으로 소위 회계조작상의 수입임 ('14년 지방예산 편성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세 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15년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에서 제외 예정)

⑧ 예탁금 및 예수금

○ 예탁금(예수금)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예탁 금(예수금)을 말하며 예탁금상환금은 그 예탁금의 상호간과 이자수입을 포함함

⑨ 융자금 원금수입

○ 융자금 수입이란 민간에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을 말함('14년 지방예산 편성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15년 지방 세외수입통계 연감에서 제외 예정)

2) 공기업 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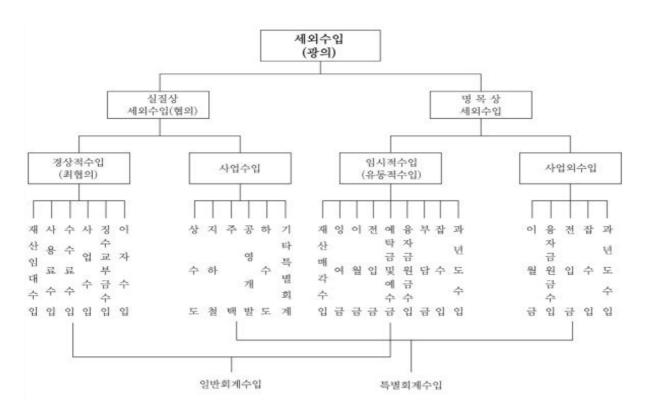
(1) 사업수입

○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수도사업의 급수수익, 하수도사업의 사용료수익, 공영개발사업의 용지매출수익,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이자수입 등이 해당됨

(2) 사업외수입

○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투자자산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됨

〈그림 1〉 세외수입의 구조



2.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되어짐
-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임
 -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음
- 둘째, 세외수입은 종류가 매우 많고 또 수입근거와 형태가 몹시 다양함
 - 그 수입 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으로 다양하고 종류에 있어서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사용료 및 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수입, 또 다른 특별회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입금, 회계연도의 단년도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 등 다양함

-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발굴되어지는 수입이긴 하나,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에 따라 그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음
- 넷째, 세외수입의 징수형태로는 현금으로 징수(금고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증지나 금권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음
 - 수입증지나 금권은 주로 그 건당 수입금액이 영세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시에 이용되고 있지만, 최근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점차 고액권 종화 되고 있는 실정임
- 다섯째, 세외수입은 주로 특정인의 공물사용 및 역무제공 등에 대한 반대급부 또 는 대가이므로 조세와는 달리 국민저항이 비교적 적다는 점임

③ 세외수입 현황 및 실태

1. 우리나라 세외수입 규모

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

- 지방세외수입의 규모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 세외수 입의 규모는 72,607,629백만원임
 - 이 중 광역자치단체가 약 3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체별로는 시계 가 약 34.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광역시, 군, 도의 순이었으며 구 계가 가장 작은 비율로 나타남

〈표 1〉 세외수입 단체별 구성

(단위: 백만원, %)

연도별	구분	총계	광역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도일	丁七	중계	시	도	시	군	구
2009	징수액	72,906,399	17,823,208	8,541,391	26,626,722	12,555,120	7,359,958
2003	구성비	100.0	24.5	11.7	36.5	17.2	10.1
2010	징수액	59,877,959	15,542,957	8,099,894	20,898,470	9,062,702	6,273,936
2010	구성비	100.0	26.0	13.5	34.9	15.1	10.5
2011	징수액	58,330,065	15,378,654	8,912,464	19,909,478	8,789,659	5,339,810
2011	구성비	100.0	26.4	15.3	34.1	15.1	9.1
2012	징수액	66,180,254	17,644,666	10,117,804	23,063,817	9,527,944	5,826,023
2012	구성비	100.0	26.7	15.3	37.8	14.4	8.8
2012	징수액	72,607,629	20,146,108	10,782,522	24,850,383	10,895,980	5,932,636
2013	구성비	100.0	17.7	14.9	34.2	15.0	8.2

자료: 2014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2)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비교

지방재정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2011
 년 이후 세외수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줄어들어 세외수입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세외수입의 비중은

약 57.4%에 달하고 있음

〈표 2〉 세외수입과 지방세 규모

(단위: 억원)

	징 수 액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180,742	1,098,089	1,106,287	1,201,183	1,263,865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세외수입	729,064	598,780	583,301	661,803	726,076	
(비율%)	61.7	54.5	52.7	55.1	57.4	
지방세	451,678	499,309	522,986	539,380	537,789	
(비율%)	38.3	45.5	47.3	44.9	42.6	

자료: 2014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2013년 세외수입 징수액은 전년대비 64,273억원(9.8%)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는 일반회계의 증가액이 50,35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5.0%가 증가하였으며 특별
 회계의 증가액은 13,918억원으로 약 4.3% 증가하였다.
- 일반회계의 경우 2010년 경우 전년대비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적 수입의 경우는 2010년 이후, 임시적수입의 경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하고 있음

〈표 3〉회계별 징수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729,064	598,780	583,301	661,803	726,076
(در (د	소 계	408,510	305.204	282,350	336,606	386,961
일반 회계	경상적수입	47,408	42,313	43,985	47,120	50,358
-1/11	임시적수입	361,102	262,891	238,365	289,486	336,603
Ē	투 별 회 계	320,554	293,576	300,951	325,197	339,115

○ 2013년 경상적 세외수입의 규모를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의 규모가 20,711억원으로 전체의 약 27.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수입 26.1%, 수수료수입 13.4%, 징수교부금수입 14.1% 순으로 나타났음

(표 4) 경상적 세외수입 규모('13)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75,634(100.0)	50,358(100.0)	25,276(100.0)
재산임대수입	5,784(7.7)	2,570(5.1)	3,214(12.7)
사용료수입	20,711(27.4)	11,230(22.3)	9,481(37.5)
수수료수입	10,117(13.4)	9,903(19.7)	214(0.8)
사업수입	19,753(26.1)	8,989(17.9)	10,764(42.6)
징수교부금수입	10,690(14.1)	10,600(21.0)	90(0.4)
이자수입	8,576(11.3)	7,066(14.0)	1,513(6.0)

자료: 2014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임시적 세외수입의 규모를 살펴보면 이월금이 175,867억원(35.0%)으로 가장 많았 으며 순세계 잉여금 21.6%, 전입금 19.1%, 기타수입 순으로 나타났음

(표 5) 임시적 세외수입 규모('13)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 계	503,197(100.0)	336,603(100.0)	166,594(100.0)
재산매각수입	23,659(4.7)	17,489(5.2)	6,170(3.7)
순세계잉여금	108,672(21.6)	75,011(22.3)	33,661 (20.2)
이월금	175,867(35.0)	153,668(45.7)	22,199(13.3)
전입금	96,148(19.1)	26,260(7.8)	69,888(42.0)
예탁금 및 예수금	14,596(2.9)	5,700(1.7)	8,896(5.3)
융자금 원금수입	3,479(0.7)	882(0.2)	2,597(1.6)
부담금	23,009(4.6)	9,334(2.8)	13,675(8.2)
기타수입	51,565(10.2)	45,022(13.4)	6,543(3.9)
지난년도수입	6,202(1.2)	3,237(0.9)	2,965(1.8)

2. 천안시 세외수입 규모

- 2013년 천안시 세외수입의 규모를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전체 538,120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62,340백만원, 특별회계가 275,780백만원이며 실 징수액은 496,775백 만원으로 일반회계 징수액 3,486백만원, 특별회계 징수액 126백만원이었음
 - 이에 징수율은 전체 92.3%로 일반회계 징수율 90.4%, 특별회계 징수율 94.2%로 나타났음

(표 6) 천안시 세외수입 징수실적('13)

(단위: 백만원,%)

	최종예산	징수결정	징수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징리	<mark>구</mark> 율
	액 (A)	액 (B)	(C)	액 (D)	(E=B-C- D)	(C/A)	(C/B)
전체	362,224	538,120	496,775	3,612	37,733	137.1	92.3
일반회계	154,138	262,340	237,118	3,486	21,736	153.8	90.4
특별회계	208,086	275,780	259,657	126	15,997	124.8	94.2

- 천안시의 2013년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496,775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237,118백만원, 특별회계가 79,532백만원, 특별회계(공기업)이 180,126백만원이었다. 경상적수입의 경우 일반회계가 41,302백만원, 특별회계가 31,652백만원
 - 일반회계의 경상적수입의 경우 수수료수입이 13,89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교부금수입 9,236백만원, 사용료 수입 7,928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적수입의 경우 일반회계가 195,816백만원, 특별회계가 47,880백만원으로 나타났음

(표 7) 천안시 세외수입 항목별 징수실적('13)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특별회계(공기	업)
합 계	496,775	237,118	79,532			180,126
	소계	41,302	31,652	,1	소계	98,170
경	재산임대수입	1,709	10	사	상수도사업	56,833
상	사용료수입	7,928	_	업 · 수	하수도사업	24,410
적	수수료수입	13,894	_	입	지역개발기금	_
수	사업수입	5,327	31,156	H	공영개발사업	16927
입	징수교부금수입	9,236	_	사	소계	81,955
	이자수입	3,208	486	업	상수도사업	37,360
	소계	195,816	47,880	외	하수도사업	31,727
	재산매각수입	9,029	_	수	지역개발기금	_
٥١	순세계잉여금	57,353	7,867	입	공영개발사업	12,868
임	이월금	87,260	26,689			
시	전입금	320	6,357			
적	예탁금 및 예수금	_	1,000			
수 입	융자금원금수입	120	_			
#	부담금	7,040	1,961			
	기타수입	31,780	2,643			
	지난년도수입	2,914	1,363			

- 천안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공유재산 임대료가 1,542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입의 경우는 기타 사용료 수입과 도로, 입장료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수수료 수입의 경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6,837백만원으로 절반수준에 가까웠으며 증지수입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 사업수입의 경우는 사업장생산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도세이었고 그 외 이자수입의 경우 대부분이 공공예금이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천안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13)-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합계	72,954
일반회계	41,302
① 재산임대수입	1,709
- 국유재산임대료	167
- 공유재산임대료	1,542
② 사용료수입	7,928
- 도로	1,909
- 하천	138
- 하수도	-
- 상수도	-
- 시장	510
- 도축장	-
- 입장료	1,509
- 기타	3,862
③ 수수료 수입	13,894
- 증지수입	3,552
- 쓰레기봉투판매수입	6,837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666
- 기타	2,839

④ 사업수입	5,327
- 사업장생산수입	4,741
- 주차요금수입	66
- 통행료수입	_
- 청산금수입	_
- 분담금수입	_
- 매각사업수입	_
- 배당금수입	_
- 의료사업수입	263
- 기타사업수입	257
⑤ 징수교부금수입	9,236
- 시도세	9,236
- 사용료	-
- 수수료	_
- 기타	-
⑥ 이자수입	3,208
- 공공예금이자	2,995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_
- 기 타	213

- 천안시 특별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임대수 입의 경우 공유재산임대료로 나타났으며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은 없었음
 - 사업수입의 경우는 매각사업수입이 30,899백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과 함께 사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의 경우 공공예금이자로 나타났음

(표 9) 천안시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실적('13)-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합계	72,954
기타특별회계	31,652
① 재산임대수입	10
- 국유재산임대료	-
- 공유재산임대료	10
② 사용료수입	-
- 도로	_
- 하천	-
- 하수도	_
- 상수도	_
- 시장	_
- 도축장	_
- 입장료	_
- 기타	_
③ 수수료 수입	_
- 증지수입	_
- 쓰레기봉투판매수입	_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_
- 기타	_

④ 사업수입	31,156
- 사업장생산수입	_
- 주차요금수입	244
- 통행료수입	_
- 청산금수입	13
- 분담금수입	_
- 매각사업수입	30,899
- 배당금수입	_
- 의료사업수입	_
- 기타사업수입	_
⑤ 징수교부금수입	_
- 시도세	_
- 사용료	_
- 수수료	_
- 기타	_
⑥ 이자수입	486
- 공공예금이자	486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_
- 기 타	_

- 2013년 천안시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산매각 수입의 경우 공유재산매각수입이 8,854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잉여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났음
 - 이월금의 경우 전년도이월사업비가 79,933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입금의 경우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320백만원이었음
 - 융자금원금수입 120백만원과 일반부담금 7,040백만원, 기타수입의 경우 과태료 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천안시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13)-일반회계

(단위:백만원)

합계	243,696
일반회계	195,816
① 재산매각수입	9,029
-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	-
-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	175
- 공유재산매각수입	8,854
② 잉여금	57,353
- 순세계잉여금	57,353
- 법정잉여금	-
③ 이월금	87,259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568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758
- 전년도이월사업비	79,933
④ 전입금	320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320
- 공사공단전입금	
- 기타회계전입금	_
- 기금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u>-</u>

⑤ 예탁금 및 예수급	_
- 예수금수입	_
- 예탁금상환금	_
- 예탁금이자수입	_
⑥ 융자금원금수입	120
⑦ 부담금	7,040
- 자치단체간부담금	_
- 일반부담금	7,040
⑧ 기타수입	31,781
- 불용품매각대	147
- 변상금 및 위약금	87
- 과태료	2,068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88
- 체납처분수입	_
- 보상금수납금	_
- 시도비반환금수입	_
- 기부금	_
- 그 외 수입	28,391
⑨ 지난년도수입	2,914

- 2013년 천안시 기타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은 없었으며 순세계잉여금 7,897백만원과 이월금의 경우 전년도이월사업비가 대부분이었음
 - 전입금의 경우 기타전입금이었으며 예수금수입 1,000백만원, 그 외 과태료가 2,425백만원으로 기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11〉 천안시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실적('13)-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합계	243,696
기타특별회계	47,880
① 재산매각수입	_
-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	_
-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	_
- 공유재산매각수입	_
② 잉여금	7,867
- 순세계잉여금	7,867
- 법정잉여금	_
③ 이월금	26,689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60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0
- 전년도이월사업비	26,509
④ 전입금	6,357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_
- 공사공단전입금	_
- 기타회계전입금	6,357
- 기금전입금	_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_

⑤ 예탁금 및 예수금	1,000
- 예수금수입	1,000
- 예탁금상환금	-
- 예탁금이자수입	_
⑥ 융자금원금수입	-
⑦ 부담금	1,961
- 자치단체간부담금	_
- 일반부담금	1,961
⑧ 기타수입	2.643
- 불용품매각대	-
- 변상금 및 위약금	-
- 과태료	2,425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_
- 체납처분수입	_
- 보상금수납금	_
- 시도비반환금수입	-
- 기부금	-
- 그 외 수입	218
⑨ 지난년도수입	1,363

- 3. 천안시 세외수입 수수료 및 사용료 현황
- (1) 도로사용료(계속도록점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
-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법령/도로법 제66조 1항, 도로법 시행령 71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도로법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 제69조 별표 3에 의거하여 부과
- (2) 변상금 및 위약금(도로사용료변상금)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
-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법령/도로법 제72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도로법 제72조 1항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 (3) 도로사용료(일시도로점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
-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법령/도로법 제66조 1항, 도로법 시행령 71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도로법 제69조 1항 관련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거 부과
- (4) 도로사용료(매설물점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
-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법령/도로법 제66조 1항, 도로법 시행령 71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도로법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 제69조(별표3)에 의거하여 부과
- (5) 하천점사용료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하천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57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별표3)과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별표1)에 의거하여 부과
- (6) 하천점사용료변상금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하천법시행령 제43조,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부과
 - 변상금 : 사용료 × 120(%)
- (7) 소하천젂사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소하천정비법 제22조, 천안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천안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제1항(별표1)에 의거하여 부과
- (8) 공유수면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별표2)에 의거하여 부과

- (9) 공유수면변상금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1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부과
 - 변상금 : 점용·사용료 × 120%
- (10) 시·군·구재산대부료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 거하여 부과
- (11) 시유재산변상금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의 거하여 부과
 - 변상금 : 사용료 × 120%
- (12) 시도유재산대부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거하여 부과

- (13) 시도유재산변상금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의거하여 부과
 - 변상금 : 사용료 × 120%

(14) 하수도사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하수도법 제65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1조, 제12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현재 하수도 사용료 평균요금은 422.16원/ton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1.54%임(2013 년 결산결과)
 - 2015년에 사용료 15%인상예정으로 평균요금은 626.7원/ton으로 예상되며, 현실 화율은 45.7%로 예상

(15) 지하수이용부담금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지하수법 30조의3, 천안시지하수조례 제5장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지하수이용부담금 85원/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 (지하수법 30조의3 제2항)
 -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한강수 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제2조) ⇒ 170원/톤 × 0.5 = 85원/톤

(16) 상수도사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수도법 제38조,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7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2007 천안시 상수도요금 조정산정 결과에 의거하여 부과
 - 지방상수도 요금현실화 목표제 추진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2015년 중 상수도 요금 인상 검토

용도	용량	요금
	1 ~ 20이하	415
가 정 용	20초과 ~ 30이하	605
, 0	30초과	880
	1 ~ 50이하	830
	50초과 ~ 100이하	995
일 반 용	100초과 ~ 300이하	1,065
	300초과 ~ 1000이하	1,105
	1000초과	1,130
	1 ~ 500이하	715
대중탕용	500초과 ~ 1000이하	900
	1000초과 ~ 1500이하	1,065
	1500초과	1,110
전용공업용	1 ~ 200이 ক	575
্ প্তত্ত্ত্ত্ত্ত্ত্ত্ত্ত্ত্ত্ত্ত্ত্ত্ত্ত	200초과	690

(17) 청소년수련관사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9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7]	준	사 용	를 료	
구 분	사용시간	단체별	평일	토. 공휴일	비 고
=i) () =i	4 전 / 4 기 기)	청소년	20,000	20,000	일반행사
체 육 관	1회(4시간)	일 반	40,000	45,000	사용제한
야 외	4 お) / 4 ス 1 フし)	청소년	10,000	10,000	
공 연 장	1회(4시간)	일 반	25,000	30,000	
회의실,	1 = 1/1 1 = 1 1	청소년	15,000	15,000	
동아리 활동실	1회(4시간)	일 반	30,000	35,000	
천연잔디 운 동 장	1회(4시간)	일 반	100,000	120,000	

부대 시설명	적용범위	기 준	사용료	비고
냉·난방 사용료	체 육 관	1회	40,000	
조명 사용료] 세 퓩 선	[기외 (4시간)	8,000	
전기 사용료	실 외	[(4 시신)	20,000	

- (18) 청소년지원센터상담심리검사이용수수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운영조례 제15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구 분			대 상	비고
지능검사		KEDI-WISC K-WAIS K-ABC	10,000	성인, 청소년, 아동	
	다면적 인성검사 MMPI		3,000	성인, 청소년	
	다면적성격 유형검사	MBTI MMTIC	5,000	성인, 청소년, 아동	
심리	поці	MBTI Form K	10,000	성인, 청소년, 아동	
검사	_ , , , , , ,		1,000	성인, 청소년, 아동	
	그림검시	HTP, DAP	1,000	성인, 청소년, 아동	
	투사검시	} Rorschach	3,000	성인, 청소년, 아동	
	주제통각검사 TAT, CAT		3,000	성인, 청소년, 아동	
	진로	탐색검사	3,000	중・고등학생	
	진로	발달검사	3,000	초등학생	
	학습기	술진단검사	3,000	초・중・고등학생	
	아동용 심리검사 Battery		20,000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성	인상담	5,000	성인	
상담	사회성건	강화프로그램	40,000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집단상담프로그램		40,000	성인, 청소년, 아동	
교육	부	모교육	30,000	학부모	

(19) 기타사용료(공사공단)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화장시설, 봉안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사용료				
구분 기준	관내		관외			
		- 선내 	인접지역	연접지역	기타지역	
	대인	100,000	200,000	300,000	500,000	
화장	화장 <u>소인</u> 시설 사산아	80,000	200,000	200,000	400,000	
시설		30,000	150,000			
	개장유골	50,000		200,000		
HAI	개인단	300,000	1,000,000			
	봉안 부부단			불가		
1 -	무연묘	100,000		불가		

(20) 입장료수입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ㅇ 공단에 위탁

(21) 입장료수입(스케이트장입장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4항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구 분		입 장 료		대여료	강습료
] T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네석표	् <u>व</u> म म
금 액	1,000	1,000	1,000	1,000	10,000

(21) 입장료수입(수영장입장료/공사공단)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사 용	를 료		
기 준		개 인		단 체		
	어른	청소년	어린이	어른	청소년	어린이
1일이용(1시간)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월 비강습회원	50,000	40,000	30,000			
월 강습회원	60,000	50,000	40,000			

- (22) 기타사용료(생활체육시설 내 수익시설 사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생활체육공원 내 수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구분		축구경기		프로축구경기/행사 등	
		평일	토·일요일	평일	토·일요일
A요금	천연잔디	300,000	450,000	700,000	1,000,000
₩₩₽	인조잔디	150,000	225,000	350,000	500,000
B 요금 (20%감면)	천연잔디	240,000	360,000	560,000	800,000
	인조잔디	120,000	180,000	280,000	400,000
C 요금 (30%감면)	천연잔디	210,000	315,000	490,000	700,000
	인조잔디	105,000	157,500	245,000	350,000
D 요금 (50%감면)	천연잔디	150,000	225,000	350,000	500,000
	인조잔디	75,000	112,500	175,000	250,000

- (23) 기타사용료(야구장 사용료/공사공단)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사용	체-	육경기	체육역	이외행사
구분	평일 공휴일(토,일)		평일	공휴일(토,일)
주간	40,000 60,000		80,000	120,000

- (24) 기타사용료(테니스장 사용료/공사공단)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사 설	2 =		
				사 된	를 료		
기 준		개 인			단 체		
		어른	청소년	어린이	어른	청소년	어린이
평일	주간	20,000			20,000		
70 2	야간		25,000		25,000		
공휴일	주간	25,000				25,000	
(토,일)	야간		30,000			30,000	
월	주간	180,000	150,000	150,000			
강습회원	야간	180,000	150,000	150,000			

- (25) 기타사용료(배드민턴장 사용료/공사공단)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사 용 료							
기 준		개 인			단 체				
		어른	청소년	어린이	어른	청소년	어린이		
평일	주,야	2,000	1,500	1,300	2,000	1,500	1,300		
공휴일 (토,일)	주,야	3,000	2,500	2,300	3,000	2,500	2,300		
월 강습회원	주,야	80,000	60,000	60,000					

- (26) 기타사용료(공사공단)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별첨 41-211993에 의거하여 부과

- (27) 기타사업수입(목욕탕 수입-공사공단)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1 -Z	사 용 료					
기준	어른	청소년	어린이	장 애 인(1∼ 3 급)		
1회이용	4,5	500		3,000		
20회이용	70,000					

- (28) 천안예술의전당 공연장 대관 사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ㅇ 천안예술의전당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별도 기준에 의하여 부과
- (29) 순환관광버스사용료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구 분	성	인	청소년 및 군인	어 린 이	
1 1	어 른	경로대상] 78 <u>年</u> 년 중 년년		
개 인	4,000	2,000	3,000	2,000	
단 체	2,000	1,000	1,500	1,000	

- (30)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람료 및 대관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관람료), 제18조(대관료)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구 극	분	어린이	청소년	어른
관 람	전시관	개인	1,500	2,000	3,000
显显		단체	1,000	1,500	2,500
	플라네타리움		1,000	1,500	2,000

(단위: 원, m²)

	구 분	사용기준	단위	금액	면적
대 관	기획전시관	1일(8시간)	회	30,000	70.62
强	다목적강당	4시간	ই]	50,000	265.59

(31)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수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 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쓰레기봉투 가격

구	분	2 ℓ	3ℓ	5ℓ	10ℓ	20 ℓ	30 ℓ	50 ℓ	100ℓ
일반	동	_	_	120	200	400	600	950	1900
글 빈	읍·면	_	_	120	180	350	600	850	1700
음스	를 물	40	50	120	200	400	-	-	-

- 산출근거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ℓ당처리비용×봉투용량(ℓ)× 주민부담률 (목 표치)+봉투제작비+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단위로 절상
- 원가분석 :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23%

(주민부담율(%):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100)

(32)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 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 수수료 부과

(33) 기타수수료(다량폐기물처리비)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 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수집은반비 9,000원/㎡, 처리비 9,000원/㎡
 - 페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처리수수료 부과

(34)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수료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ㅇ 전국 재활용품 판매단가의 평균 금액을 산출

(35)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 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음식물 120리터 수거통: 2,400원
 - 음식물전용봉투 20리터 : 400원 기준으로 환산

- (36) 음폐수 반입 수수료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음폐수 처리 수수료 : 관내업체: **33.000**원/톤, 관외업체: **43.000**원/톤
 - 음폐수 처리 공법별 평균 단가(65,000원)에서 유지관리비 20%(13,000원/톤) 및 운반비(9,000원/톤) 감가상각 적용

(37) 소각열 판매 수수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 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소각열 판매 수수료: 31.810원/톤
 - 산업용 LNG 적용가격 기준 61% 적용(이익배분율)

(38) 시장사용료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토지공시지가의 25/1,000×면적) + (건물시가표준액의 25/1000×면적)
 - 매년 공시지가, 건물기준가격(국세청) 등에 의해 사용료 금액이 결정

(39) 농산물도매시장공유재산사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천안시농산물도매지정·관리 운영조례 제70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183.565.450원

- 2013년 도매시장 감정평가 결과
- (40) 도시공원·녹지 점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ㅇ 점용료산정기준 적용
- (4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ㅇ 산지전용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
 - 준보전산지: m²당 3.350원 / 보전산지: m²당 4.350원

(42) 제증명 수수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지역보건법 제14조,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제3조, 보건복지가족부령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500원
 - 건강진단서(일반취업용) 16,460원
 - 건강진단서(기숙사용) **14,330**원
 - 기숙사건강진단서(폐결핵,매독,에이즈) 10,260원
 - 기숙사건강진단서(폐결핵) 6,160원
 - 기숙사건강진단서(폐결핵,B형간염,매독,에이즈)15,630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 5.000원
- 법무부 외국인유학생 건강진단서 5,000원
- 삼성추가 4항목 6,310
- 증명서 재발급 300

(43) 기타수가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제5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골밀도검사 : - 혈액형검사 : - **B**형 간염검사 :

10,000원 2,030 5,370

- C형 간염검사 : - 흉부 X-ray : - 혈액검사 :

3,590 4,500 4.500

- 생화학검사 : - 소변검사 : - 미생물검사 :

4,500 4,500 4,500

- 치아홈메우기 : - 불소바니쉬 도포

4,500 : 4,500

(44) 진료비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천안시 보건소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일반) 4.500원(본인부담금)
 -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보험) 1,100원(본인부담금)
 - 진료+물리치료+처방전 1,000원(본인부담금)
 - 진료+물리치료(단독) 1.600(본인부담금)
 - 한방진료(침+투약) 1,300(본인부담금)
 - 한방진료(침 또는 투약단독) 1,100(본인부담금)

- (45) 예방접종비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제6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약품가(조달가)에 의거, 장티푸스 : 4,350원 / B형간염 : 3,400원 / 신증후군출 혈열 : 8,130원
- (46) 암표지자 및 갑상선기능검사 수수료 관련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갑상선 기능검사 (15,000원): 시약비용 **3**종목(11,420원)
 - T3: 3,780원, T4: 3860원 ,TSH: 3780 원
- 여성암검사(30,000원):시약비용 5종목 (27,710원)
 - AFP : 3,750원 , CA125 : 6,470원, CA19-9 : 6,470원, CA15-3 : 5,650원 , CEA : 5,370 원
- 남성암검사(25,000원): 시약비용 4종목 (21,890원)
 - AFP: 3.750원, CEA: 5.370원, CA19-9: 6.470원, PSA: 6.300원
- (47) 농기계임대사용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조례 16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결정(농기계 취득가격 0.6~0.5% 사용료 적용)

- (48) 농작업대행료/부과·징수 관계법령
- 천안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지역 내 농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소장이 결정
- (49)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천안시 농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부품비가 20,000원 이하인 경우 무료, 20,000원 이상인 경우 20,000원을 공제한 차 액만 징수
- (50) 기본시설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전기 및 냉난방 사용료(신부문화회관, 성환문화회관)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천안시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인근 시·군시설 사용료 등 비교 검토 후 책정
- (51) 수강료(신부문화회관, 성환문화회관)
- ① 부과ㆍ징수 관계법령/천안시시민문화여성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월 1만원, 인근 시·군시설 사용료 등 비교 검토 후 책정
- (52) 도서관 시설 사용 대관료
- ① 부과 · 징수 관계법령/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 조례의 별첨에 따라 부과

(53) 가축분뇨처리수수료

- ① 부과·징수 관계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천안시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시 설 별	부과기준	계	수집·운반수수료	공공처리시설사용료
허가대상	1L	10원	8원	2원
신고대상	1L	9원	8원	1원

4 지방세외수입의 문제

① 요율체계의 미조정

-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근거가 다양하여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음과 같이 이유들로 요율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그동안 사용료와 수수료수입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인식의 부족이 상존해 있음
 -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공공요금으로 여겨지고 있어 물가 또는 공공요금 인상억 제와 연계되어 적기에 요율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사용료와 수수료 요율조정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다양한 근거규정에 따른 업무 번잡, 자치단체는 징수에 대한 무관심 등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미흡함

② 일반재원을 활용한 적재보전

- 지속적인 요율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용료와 수수료가 제공원가에 미달되어 진 상태로 이에 따른 적자보전이 일반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임
 - 이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부담의 불형평성이 나타나거나 해당서비스 에 대한 과잉수요가 발생하여 자워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고 있음

③ 관련법규 개정의 어려움

○ 원가보상율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 계기관의 이견으로 쉽지 않음

④ 원가분석 요소의 차이

○ 원가분석에 따른 문제로서 단위당 중요하게 작용되는 원가분석 요소들이 서비스 간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으며 각 프로그램들에 따른 기관별 차이가 크게 나타 날 수 있어 평균 적정요율 등의 산출이 어려워 비교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⑤ 유료화 사업의 무료서비스 제공

- 중앙부처가 업무를 위임하면서 각종 수수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자치단체의 업무처리를 위한 경비를 보존하지 못하고 있음
 - 무료화가 필요한 대상은 있으나 현지조사 등에 따라 관련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는 경우 유료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료화를 고수하는 것은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 확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⑥ 요율체계의 불균형

-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간, 기관간, 유사종류간 불균형이 나 타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간 요율체계의 불균형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요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지나친 불균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서비스간 요율체계의 불균형의 경우 서비스가 합리적인 근거없이 요율 이 결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업무처리의 통일성과 요율의 형평성 차원에 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합리적인 표준요율을 마련하여 자치단체간 요율체계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유사 서비스간에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⑦ 비신축적 조례규정

○ 이미 상위법규에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요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경우 지역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

하기 어려움

- 또한,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을 규정하는 근거법규가 광범위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법률을 통해 조례의 제정범위를 제약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안

- ① 사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방식 검토
- 현재 부과하고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부과기준 과 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시 됨
 - 예를 들면 도로사용료의 경우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도로점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혼잡, 보행자의 통행불편, 각종 사고의 위험 등과 같은 외부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토지의 점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률과 토지의 용도를 이용하는 요율결정 기준이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임

② 원가분석 방식의 규정

- 세외수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각 세외수입별 원가가 분석되어져야 하지만 이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과 요소들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외수입별 원가분석 방식과 요소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져야함
 - 이를 통해 관련부서 및 관계자가 필요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정기적인 원가분석의 실시

-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 뿐 아니라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 적인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사용료와 수수료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임

④ 근거 조례의 개정

○ 세외수입의 부과와 관련하여 요율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기에 정기적인 원가분석 실시 이후 요율체계의 변경이 필요시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야 함 - 현재 대부분의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장 기간 적용되고 있어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⑤ 불합리한 무료서비스의 유료화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 이익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은 조세수입의 한계와 추가 재정수요을
 충당하는 측면에서 당연시 되어야 함
 - 그러나 모든 수수료를 유료화 시킬 수는 없으며 불합리한 무료수수료를 점검하여 부담의 공평과 재원의 배분, 재정확충 차원에서 유료화를 검토하여야 함(나종근, 2001)

⑥ 신 사용료와 수수료의 발굴

- 불합리한 무료서비스의 유료화와 함께 기존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사용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임성 일, 1998)
 - 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향후 신 사용료, 수수료의 발굴은 사회변화의 경향에 따라 환경, 스포츠, 레저, 문화예술, 정보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주로 발굴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이 외 혼잡교통료,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과 같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한 규제성 사용료의 부과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⑦ 단일법제화 추진

- 사용료, 수수료의 효율적 관리와 실질적 재원확충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상위법규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규정된 법적 근거를 가능한 단순화, 단일법제화 시키도록 하여야 함(임성일, 1998)
 - 특히, 수수료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일반적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 대부분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을 운영하는 관계부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

- ⑧ 수수료징수조례 별표내용 확대
- 각 개별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수용하여 유사 수수료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현재 '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개별조례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기타수수료의 요율을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
 - 개별조례에는 부과목적, 부과근거, 부과방법, 부과시기, 부과기준 등의 개괄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율은 별표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사용료에 있어서도 개별조례에 분산되어 있는 각종 사용료의 요율을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포괄적 요율 규정은 개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요율조정시 타부서 유사서비스의 요율에 대한 비교와 검토가 이 루어져 수수료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